ISSN 2672-1597

KCGS Report

제14권 7호 | 통권 제175호
2024. 7.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는 지배구조, 사회, 환경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ESG기준원의 정기간행물입니다.

KCGS Report 제14권 7호

발 행 일 : 2024년 7월 31일
발 행 인 : 심 인 숙
발 행 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
제 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4권 7호 | 2024. 7.

ESG 동향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 2

Global News

1. 유럽의회 및 EU이사회, 탄소중립산업법(NZIA) 최종승인 및 발효 13
2. 블랙록(Blackrock), 기후·탈탄소화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 발간 16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

문종원*

▶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타 주요국 대비 그 수준이 충분히 높다고 보기 어려움

▶ 국내 주요 상장기업 대부분은 이사회 내에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한편 이사회 성별 다양성에 관한 자본시장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또한 확인됨

▶ 반면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 기업이 충분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

▶ 관련하여,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요소를 근거로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사례 또한 확인되며 이는 이사 선임 안건 전체 반대 사례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 성별 다양성 요소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국내 상장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주주권 행사 사례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개요

□ 지난 2020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1]이 시행된 이후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2]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이사회 구성원 전부를 여성으로만 구성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같은 의미로 '이사회 내 여성 이사 존재 여부'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본고 역시 이를 통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을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jwm@cgs.or.kr

1)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구현지, 국내 여성이사 선임 현황 분석, KCGS Report 제13권 8호, 한국ESG기준원

판단하고자 함

○ 상기 자본시장법 조항은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다양성 제고를 통해 유연하고 균형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3]

○ 해당 조항 도입 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여성 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비율[4]과 두 시장 상장기업 전체 등기이사 중 여성 이사의 비율[5] 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6]

□ 그러나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은 충분히 높다고 보기 어려움

○ 한 예로, 주요국 상장기업 이사회 내 여성 이사 현황(2023년 3월 기준)을 분석한 Deloitte의 보고서[7]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표본 수 461개사)의 등기이사 중 여성 이사의 비율은 8.8%로 전체 조사대상 50여개국 중 45위를 기록하며 최하위 5개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조사대상국 중 Dow Jones[8] 및 FTSE[9] 지수 등에서 한국과 같은 선진국 시장(developed market)으로 분류되는 국가들과 대비되는 결과임
-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과소 대표된 성별에 해당하는 이사의 비중이 최소 3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이사회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 대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10] 프랑스(44.0%) 및 이탈리아(40.4%) 등에 비해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위반 관련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스위스(27.2%) 및 일본(12.8%)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국내 상장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관련하여, 전 세계 국부펀드 중 가장 많은 총자산(약 2,263조 원)[11]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의 자산 운용기구 NBIM(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측 담당자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의 성장 여정을 ESG 관점에서 소통하며 주주관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12]

3) 2021년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1.08.25
4) 2020년 20.54% → 2021년 23.00% → 2022년 25.96%
5) 2020년 4.66% → 2021년 5.40% → 2022년 6.16%
6) 주석 2)와 동일
7)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8th edition, Deloitte, 2024.03.06
8) DOW JONES DEVELOPED MARKETS EX-U.S. INDEX, 2024.06.30
9) FTSE Developed Index, 2024.06.28
10) Kirsch, A. (2021). Women on board policies in member states and the effects on corporate governance.
11) Top 100 Largest Sovereign Wealth Fund Rankings by Total Assets,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12) 세계최대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내언론 첫 인터뷰…"건강한 지배구조 갖춰야 진정한 밸류업", 헤럴드경제, 2024.05.29

○ 향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요소에 따른 주주권 행사 사례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고는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주주총회 안건 반대 사례 등을 검토하여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국내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

□ **(분석 대상)**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2024년 사업연도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2,399개사[13)]

□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의 공시자료 내 등기이사 기본 정보, 업종 분류[14)], 재무 정보 등을 수집 후 상장시장 및 업종별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을 살펴봄

□ 상장시장별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

○ 분석 대상 중 여성 이사가 존재하는 기업에 비해 그렇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1분기 기준(이하 동일), 여성 등기이사가 존재하는 기업은 31.4%,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68.6%인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 시장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
- 한 예로, 대부분의 미국 기업을 포함하는 Russell 3000 지수 구성 기업 중 이사회 내에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의 2% 미만(5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15)]

〈표 1〉 상장시장별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여성 이사 존재	여성 이사 미존재	여성 이사 존재	여성 이사 미존재
335사	463사	418사	1,183사

출처: DART

○ 한편,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시장에서 더 높은 것이 확인됨

1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리츠(REITs), 12월 결산기업이 아닌 기업, 상장폐지 기업(24.07.10 기준) 제외
14) WICS(Wis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분류 기준
15) Q1 2024 Equilar Gender Diversity Index, Equilar, 2024.06.24

- 분석 대상 중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58.0%,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7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시장 간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 차이는 각 시장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자산규모 격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대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자산규모가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됨
- 실제 분석 대상의 최근 사업연도 말 총자산 평균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051억 원,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98억 원으로 확인되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적용 대상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중 180개사인 반면 코스닥시장은 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임

□ 업종 분류별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

○ 아래에서는 분석 대상 전체가 포함되는 WICS 업종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에 따른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에 대해 살펴봄

○ 대분류 업종 전체에서 평균 여성 이사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유틸리티(0.765명), 가장 적은 업종은 IT(0.275명)로 나타남

○ 또한 유틸리티 업종은 각 업종별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 또한 가장 낮게(41.2%)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을 보임

〈표 2〉 WICS 대분류 기준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

	기업수 (사)	여성 이사 수 평균 (명)	여성 이사 수 별 기업수(사)				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유틸리티	17	0.765	7	8	1	1	17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30	0.762	70	35	17	8	130
금융	75	0.680	37	27	9	2	75
에너지	36	0.583	20	12	3	1	36
건강관리	329	0.462	215	84	25	5	329
경기관련소비재	388	0.425	256	104	23	5	388
산업재	383	0.397	257	105	16	5	383
필수소비재	107	0.393	74	26	5	2	107
소재	246	0.378	172	56	17	1	246
IT	688	0.275	538	114	34	2	688

출처: DART

○ 이러한 결과는 자본시장법 외에도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와 정책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기업 등이 유틸리티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 실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1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17] 등의 여성 이사 선임 관련 규제가 공기업(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중분류 업종 전체에서는 은행 업종의 평균 여성 이사 수가 가장 많고(1.636명), 식품과기본식료품소매 업종의 평균 여성 이사 수가 가장 적게(0.125명) 나타남

○ 특히 은행 업종은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9.1%), 여성 이사가 3명 이상 존재하는 기업의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18.2%) 타 업종 대비 높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을 보이는 것이 확인됨
- 다만 이는 앞선 유틸리티 업종 사례와 유사하게, 은행 업종에 속한 기업들 역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모범관행[18] 등에 따라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짐

〈표 3〉 WICS 중분류 기준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

	기업수 (사)	여성 이사 수 평균 (명)	여성 이사 수 별 기업수(사)				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은행	11	1.636	1	4	4	2	11
전기통신서비스	6	0.833	3	1	2	0	6
보험	13	0.769	4	8	1	0	13
유틸리티	17	0.765	7	8	1	1	17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124	0.758	67	34	15	8	124
증권	23	0.652	12	7	4	0	23
에너지	36	0.583	20	12	3	1	36
소매(유통)	41	0.561	21	17	3	0	41
운송	42	0.524	25	14	1	2	42
부동산	4	0.500	2	2	0	0	4
호텔,레스토랑,레저등	18	0.500	11	5	2	0	18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92	0.478	61	23	6	2	92
교육서비스	17	0.471	11	4	2	0	17
내구소비재와의류	163	0.466	107	40	12	4	163
제약과생물공학	237	0.456	154	61	19	3	237
전자와 전기제품	76	0.434	52	16	7	1	76
식품,음료,담배	91	0.429	61	23	5	2	91

16)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금융감독원, 2023.12.12

	기업수 (사)	여성 이사 수 평균 (명)	여성 이사 수 별 기업수(사)				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자본재	314	0.382	212	87	12	3	314
소재	246	0.378	172	56	17	1	246
상업서비스와공급품	27	0.370	20	4	3	0	27
자동차와부품	149	0.329	106	38	4	1	149
디스플레이	78	0.269	63	11	3	1	78
소프트웨어와서비스	158	0.266	123	28	7	0	158
가정용품과개인용품	8	0.250	6	2	0	0	8
다각화된금융	24	0.250	18	6	0	0	24
기술하드웨어와장비	222	0.248	177	35	10	0	222
반도체와반도체장비	154	0.247	123	24	7	0	154
식품과기본식료품소매	8	0.125	7	1	0	0	8

출처: DART

○ 이처럼 규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정책 또는 법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자본시장법 준수 현황

○ 한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이 일부 확인됨

- 분석 대상 중 여성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총 12개사이며,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11개사,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1개사로 나타남
- 12개사 중 산업재·경기관련소비재·소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1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함

○ 해당 기업들의 동법 미준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각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추가 조사하였으며, 이 중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A사)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음
- B사)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검토하였으나,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해 선임하지 못함
- C사) 자사 정책으로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성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찾지 못해 선임하지 못함
- D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이사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로 인해 여성 후보자가 최종후보로 확정되지 못함
- E사) 건설업종 특성상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현재 당사의 여성 이사는 없음

- F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에 따라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주력사업부문인 시멘트, 레미콘, 레미탈 사업의 특성상 여성 종사자가 적고, 관련 전문인력풀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임

○ 이처럼 기업들은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단순히 적합한 여성 이사 후보를 찾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미준수 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동법 준수 및 이사회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 한편, 산업재(자본재) 업종 일부 기업들은 미준수 사유를 업종 특성과 관련지어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점이 동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종합하면,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은 1)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이 낮으며, 2)그 중에서는 자본시장법 이외의 규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3)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일부 확인됨

- 이러한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래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주주총회 안건 반대 사례

□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 기업이 충분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함

○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 Canon사를 대상으로 한 Blackrock 등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들 수 있음

- 지난 2022년 3월, 당시 Blackrock은 Canon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Fujio Mitarai 후보의 재선임 안건에 기권하며 회사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부족(여성 이사 미존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19)]

- 그러나 Canon사 측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자, Blackrock은 이후 2023년 3월 개최된 Canon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Fujio Mitarai 후보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함[20)]

- British Columbia Investment, Calvert,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등의 기관투자자 역시 반대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50.59%라는 낮은 찬성률로 가결됨

19) 일본의 경우 법률 등으로 여성 이사 선임이 의무화된 국가는 아님
20) Vote Bulletin: Canon Inc., Blackrock, 2023.03.30

- 이후 Canon사는 같은 해 9월 여성 이사 선임 계획을 밝힌 후[21],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최초로 여성 이사 Akiko Ito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등 해외 기관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 앞서 살펴본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을 고려할 때,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주로 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반대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 세계 자산운용사 중 운용자산(AUM) 상위 20개사[22]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검토하여 최근 1년 내[23] 국내 상장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관련 세부 정보가 확인되는 Federated Hermes·Fidelity 2개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조사함

○ 이후 각 자산운용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 전체 의결권 행사 내역 중 이사 선임 안건의 행사 결과 및 반대 근거를 살펴봄

□ Federated Hermes는 동 기간 중 총 44개사의 주주총회에서 134건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중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하여 7개사의 12개 안건(전체 반대 사례 중 22.6%)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확인됨

○ Federated Hermes의 구체적인 이사 선임 안건 반대 사유는 “이사회 성별 다양성 접근 방식과 관련된 우려 사항”[24]으로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대 투표를 행사한 기업들은 모두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 적용 대상이며, 여성 이사가 1명이고, 이사 중 여성 이사의 비율이 20% 이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와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기업들의 이사 선임 안건에는 찬성한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특별한 우려 사항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반대 투표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Fidelity는 동 기간 중 총 46개사의 주주총회에서 180건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요소를 근거로 8개사의 8개 안건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남(전체 반대 사례 중 44.4%)

21) Canon Inc. announces director changes, Canon, 2023.09.07
22) Top 100 Asset Manager Managers by Managed AUM,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23) 2023.07.01.~2024.07.01
24) 원문은 “Concerns related to approach to board gender diversity.”

○ Fidelity는 “이사들 간의 성별 다양성 수준이 낮다”[25]는 점을 근거로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됨
- 반대 투표를 행사한 8개사 중 7개사는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산규모 등에 관계없이 이사회 성별 다양성 요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 나머지 1개사는 자본시장법 조항 적용 대상이며, 여성 이사가 1명 존재하나 이사 중 여성 이사의 비율이 8.33%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닌 일부 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는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움

〈표 5〉 해외 기관투자자 2개사의 국내 상장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내역

기관투자자	ⓐ이사 선임 안건 수	ⓑ찬성 안건 수	ⓒ반대 안건 수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반대 안건 수
Federated Hermes	134건	81건	53건	12건
Fidelity	180건	162건	18건	8건

출처: Federated Hermes, Fidelity

□ 이처럼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요소를 근거로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 수 및 기간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요소를 근거로 이사 선임에 반대한 경우가 전체 반대 사례 중 약 2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결권 행사 내역 관련 세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들 역시 의결권 행사 지침 등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26]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짐작됨

□ 비록 현재까지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요소에 따라 이사 선임 안건이 실제로 부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를 근거로 앞서 살펴본 Canon사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주요 상장기업 전반에 걸쳐 이사회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25) 원문은 “There is a low level of gender diversity amongst board directors.”
26)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Proxy voting guidelines for Asia ex Japan, Hong Kong, and Chinese securities, Blackrock, 2024.01

결론 및 시사점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시행 이후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현황은 선진국 시장 국가들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분석 결과,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분석 대상인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여성 등기이사가 존재하는 기업은 31.4%,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68.6%인 것으로 확인됨

○ 여성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시장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시장 간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 차이는 각 시장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자산규모 격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됨

○ 규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정책 또는 법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적용 대상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일부 관찰되며 해당 기업들은 대체로 동법 미준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충분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함

○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Canon사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Blackrock의 반대 사례가 꼽힘

○ Blackrock은 Canon사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부족을 우려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이후 차년도에 동 안건에 반대 투표한 바 있음

□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요소를 근거로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사례 또한 확인됨

○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의 경우, 이사 선임 안건 전체 반대 사례 중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44%인 것으로 나타남

○ 여타 기관투자자들 역시 의결권 행사 지침 등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 짐작됨

□ 이사회 성별 다양성 수준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국내 상장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향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요소에 따른 주주권 행사 사례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자본시장법 조항 미준수 기업뿐만 아니라 주요 상장기업 전반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Global News

1. 유럽의회 및 EU이사회, 탄소중립산업법(NZIA) 최종승인 및 발효

한효원*

□ 지난 6월 13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유럽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 생태계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The Net-Zero Industry Act, 이하 'NZIA')을 최종 승인하고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보함[1)]

- ○ NZIA는 유럽연합 내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산업 기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제정됨
- ○ 동 법은 2024년 6월 29일 EU회원국 전체에 발효됐으며, 제26조 및 제28조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됨
- ○ 제25조(1)항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지침 2014/24/EU 제2조(1)항(16)과 지침 2014/25/EU 제2조(1)항(12)에 정의된 중앙 구매 기관이 체결한 계약' 및 '2,500만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계약'에만 적용됨

□ **탄소중립산업법(NZIA) 주요 내용**

❶ 탄소중립 기술 목록(List of Net-zero Technologies)

○ NZIA에서 제시하는 탄소중립 기술은 최종 제품(final products), 특정 구성요소(specific components) 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기계(specific machinery primarily used for the productions of those products)를 의미하며, 원자력 에너지 기술 등을 포함한 19가지 기술을 명시하고 있음 (〈표 1〉 참고)

〈표 9〉 탄소중립 기술 목록

(1) PV(태양광 발전), 태양열 전기, 태양열 기술 등 태양광을 이용한 기술	(11) 수력 발전 기술
(2) 육상 풍력 및 해상 재생에너지 기술	(12) 기타 재생에너지 기술
(3)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기술	(13) 에너지시스템 관련 에너지 효율 기술
(4) 히트펌프와 지열에너지 기술	(14) 비생물학적 기반의 재생 가능 연료 기술
(5) 전해조 및 연료 전지 등 수소 기술	(15) 바이오테크 기후 및 에너지 솔루션
(6) 지속가능한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기술	(16)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산업 기술
(7)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17) 이산화탄소 수송 및 활용 기술
(8) 운송용 전기 충전 기술과 전력망을 디지털화하는 기술 등 전력망 기술	(18) 운송용 풍력 및 전기 추진 기술
(9) 핵연료주기 기술, 핵분열 에너지 기술 등 원자력 에너지 기술	(19) 기타 핵 기술
(10)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 기술	

출처: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ESG 데이터팀 선임연구원, hyowon.han@cgs.or.kr

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4R1735&qid=1719904509036

❷ 행정 및 허가 승인 절차 간소화(Streamlining Administrative and Permit-granting Processes)

○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은 최소 1개 이상의 단일 연락 창구(single points of contact)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기술 제조 프로젝트의 허가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및 관련 프로세스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함

○ '탄소중립 기술 제조 프로젝트'의 허가 승인 절차 기간은 연간 제조 역량에 따라 12개월 이내 또는 18개월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Net-zero strategic projects)'의 경우 연간 제조 역량에 따라 이보다 더 짧은 9개월 이내 또는 12개월 이내에 허가하도록 규정함

❸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Net-zero Strategic Projects)

○ EU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50% 이상 의존하는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 EU 내 제조 역량(manufacturing capacity)을 높이거나 EU의 2030년 기후·에너지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상당한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 경우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로 인정함

○ 탄소중립 기술에 필요한 인력을 유치·유지 및 업스킬·재교육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탄소중립 기술 공급망의 일부로서 중소기업(SME)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등 EU의 탄소중립 산업 공급망 또는 전방산업(Downstream) 부문에 명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로 인정함

○ 탄소중립 산업 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탄소중립 가속화 단지(Net-Zero Acceleration Valleys)'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개발, 민간 투자 지원 등 정부 조치가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❹ 이산화탄소 포집 역량(CO2 Injection Capacity)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매년 최소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산화탄소 수송 인프라를 개발해야 함

○ 석유·천연가스 회사들은 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부지를 제공하거나 CCS 프로젝트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 회사의 유럽 내 생산량(2020~2023년)에 비례하여 기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❺ 시장 접근성 향상(Access to Market)

○ 탄소중립 제조기술에 대한 공공조달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탄소중립기술의 제3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제한함

○ 재생에너지원 배치를 위한 경매(Auctions to deploy renewable energy sources) 시, 사회적 책임, 사이버 보안, 적시 납품 능력을 고려하고 해당 탄소중립기술의 지속가능성과 EU 내 탄소중립기술의 복원력 기여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 각각 최소 5%의 가중치를 부여함

❻ NZIA 관련 기관 신설 등

○ '유럽 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European Net-zero Industry Academies)'를 설립하여 회원국과 교육 훈련 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 교육 내용 및 자료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 그룹(SET(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Steering Group)'을 구성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와 회원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탄소중립 유럽 플랫폼(Net-zero Europe Platform)'은 회원국 및 EU집행위원회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며 탄소중립 기술 및 프로젝트의 조정을 지원함

○ 기타 사항으로는 탄소중립 규제 샌드박스(Net-zero Regulatory Sandboxes),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조치, 지배구조, 모니터링, 법안의 시행과 적용 등이 있음

2. 블랙록(Blackrock), 기후·탈탄소화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 발간

박정민*

□ 블랙록(Blackrock)은 지난 7월 2일, 기후·탈탄소화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Climate and Decarbonization Stewardship Guidelines)을 발표함[1)]

-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산을 저탄소 투자목표에 맞춰 투자하도록 명시적으로 제시한 고객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기후 및 탈탄소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지침(voting guidelines) 및 주주관여 정책을 담고 있음
- 블랙록은 고객 대상 서한을 통해 해당 정책은 유럽에 소재한 83개의 펀드(약 1,500억 원 규모)에 적용될 예정이나, 향후 미국 및 아시아 펀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힘[2)3)]

□ 현재 블랙록은 탈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유럽 내 고객들의 요구와 반(反) ESG 캠페인이 우세한 미국 내에서의 법적 논쟁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2023년 10월, 블랙록은 포트폴리오 내 기후목표를 설정한 기관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후-전환 지향(climate-transition oriented) 사모대출펀드(private debt fund)를 출시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럽 시장과 일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함[4)]

○ 한편, 투자 결정 시 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금지하는 공화당이 우세한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블랙록이 주주 수익을 희생시키면서 ESG를 추구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임

- 작년 12월 미국 테네시주는 블랙록이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ESG 요소를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펀드에서 ESG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블랙록을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음[5)]
- 이어 올해 3월, 미국 미시시피주 또한 동일한 사유로 블랙록에 즉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림[6)]
- 이에 대응하여, 블랙록은 기후 이니셔티브인 Climate Action 100+ 의 회원 자격을 블랙록 전체가 아닌 보다 축소된 국제 부서로 이관함으로써 참여 비중을 축소하였으며, "미국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 회원 자격에서는 탈퇴한다"고 밝힘[7)8)]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jmpark@cgs.or.kr

1)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 Climate and Decarbonization Stewardship Guidelines", Blackrock, 2024.07.
2) BlackRock navigates climate proposals with new voting policy, Financial Times, 2024.07.02.
3) BlackRock Launches Decarbonization Voting and Engagement Policy for Climate-Focused Funds, ESG Today, 2024.07.10.
4) BlackRock Launches Climate Transition-Focused Private Debt Fund, esg today, 2023.10.05.
5) Tennessee sues BlackRock citing 'misleading' ESG strategy, Reuters, 2023.12.18.
6) Mississippi Issues Cease-and-Desist against BlackRock for Allegedly Misleading Investors on ESG Strategy, National review, 2024.03.27.
7) JPMorgan and State Street quit climate group as BlackRock scales back, Financial Times, 2024.02.16.
8) JPMorgan, State Street exit Climate Action 100+ coalition, ESG Dive, 2024.02.15.

□ 블랙록은 이러한 고객들의 상이한 요구를 해결하고자 별도의 기후·탈탄소화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탈탄소화를 명시적인 투자 목표로 제시한 고객의 펀드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라 밝힘

- 그 외의 펀드에 대해서는 블랙록의 기존 벤치마크 정책(BIS Benchmark Policy)이 적용되며, 해당 정책은 재무적인 이슈를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함

□ 가이드라인 내 의결권 행사지침 및 주주관여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업 공시(corporate disclosure)**

- 투자 기업이 저탄소 전환에 대한 목표를 공개할 것을 기대하며, 파리협정 1.5°C 목표에 맞춘 저탄소 전략 공개, IFRS S1 및 IFRS S2 기준에 따른 보고, Scope 1·2 와 더불어 중요한 Scope 3 배출량에 대한 보고, 그리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이사회 및 이사(boards and directors)**

- 이사회 및 개별 이사 평가 시에, 1) 사업 모델에서 기후·저탄소 전환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감독 책임 여부, 2) 경영진의 저탄소 전환 프레임워크와 장기 전략 수립 여부, 3)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내 기후·저탄소 전환 위험요소의 통합 여부 등을 고려함
- 회사 공시 및 소통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저탄소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상임이사(non-executive) 선임에는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이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는 이사의 경우 반대투표를 행사할 수 있음
- 특히 저탄소·기후·지속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닌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임사외이사(lead independent director), 비상임 의장(non-executive chair of the board)이 이에 대한 책임 소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기후 관련 이슈로 특정 이사에 반대투표를 행사했음에도 이후 회사가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기후·저탄소 전환 관련 위험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는 목적에서 책임 소지가 있는 이사들의 재선임에 반대할 여지가 있음

○ **기후·저탄소 관련 주주제안(Shareholder proposals on climate and low-carbon transition matters)**

- 기후·저탄소 관련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주제안을 지지할 수 있음
  - 기업이 파리협정 1.5°C 목표와 일치하는 사업 계획과 관련 공시를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
  - 기업의 온실가스 Scope 1·2 감축 목표를 2050년 넷제로 달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제안

- 기업의 사업모델 내에서 중요한 Scope 3 배출 카테고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
- 기후 관련 로비 활동과 전략적 정책과의 일치 여부의 공개 수준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제안

- 다만, 환경 관련 이슈라 할지라도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거나, 특정 비즈니스 또는 전략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주주제안은 지지하지 않음
- 회사의 기후위험 또는 저탄소 전환 관련 행동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관 변경 주주제안 또한 지지하지 않음